파산선고 등에 따른 결격조항 정비를 위한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관 11개 법률 일부개정을 위한 법률안 (이원택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3540 발의연월일: 2024. 9. 2.

발 의 자:이원택・이용선・박홍근

박주민 · 김용만 · 이기헌

김남희 · 오세희 · 이병진

임미애 의원(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은 채무자 등의 효율적인 회생을 목적으로 하는 법률로서, 파산 등을 이유로 채무자가 취업제한 등의 불이익 처분을 받지 않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이 법의 취지에도 불구하고 다수의 현행 법률에서 파산선고후 복권되지 않은 경우 등을 취업 등의 결격사유로 일률적으로 규정하고 있어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코로나 확산으로 파산 등의 신청 사례가 늘어나고 있는 상황을 함께 고려할 때, 이러한 규정은 정비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이에 「국제항해선박 등에 대한 해적행위 피해예방에 관한 법률」 등 파산선고를 이유로 결격조항을 두고 있는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 원회 소관 11개 법률을 일괄하여 개정함으로써 파산으로 인한 차별적 취급을 원칙적으로 금지하려는 것임.

법률 제 호

파산선고 등에 따른 결격조항 정비를 위한 농림축산식품해 양수산위원회 소관 11개 법률 일부개정을 위한 법률안

제1조(「국제항해선박 등에 대한 해적행위 피해예방에 관한 법률」의 개정) 국제항해선박 등에 대한 해적행위 피해예방에 관한 법률 일부 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제2호를 삭제한다.

제26조제1항제2호를 삭제한다.

제2조(「선박투자회사법」의 개정) 선박투자회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1항제2호를 삭제한다.

제3조(「선주상호보험조합법」의 개정) 선주상호보험조합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0조제1항제3호를 삭제한다.

제4조(「수산물 유통의 관리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의 개정) 수산물 유통의 관리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제2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피성년후견인

제5조(「수산업협동조합법」의 개정) 수산업협동조합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1조제2항제3호를 삭제한다.

제51조제1항제3호를 삭제한다.

제6조(「어선법」의 개정) 어선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1조의3제3호를 삭제한다.

제7조(「어선원 및 어선 재해보상보험법」의 개정) 어선원 및 어선 재해보상보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0조제4항제2호를 삭제한다.

제8조(「어장관리법」의 개정) 어장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제2호를 삭제한다.

제9조(「염업조합법」의 개정) 염업조합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4조제1항제3호를 삭제한다.

제10조(「해양환경관리법」의 개정) 해양환경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1조제1항제3호를 삭제한다.

제11조(「해운법」의 개정) 해운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2호를 삭제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결격조항 정비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행한 조치 등은 이 법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유효한 것으로 본다.

국제항해선박 등에 대한 해적행위 피해예방에 관한 법률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9조(임원의 결격사유) 다음 각	제19조(임원의 결격사유)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	
람은 해상특수경비업자인 법인	
의 임원이 될 수 없다.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u><삭 제></u>
아니한 사람	
3. ~ 5. (생 략)	3. ~ 5. (현행과 같음)
제26조(해상특수경비원의 자격기	제26조(해상특수경비원의 자격기
준)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	준) ①
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해상특	
수경비원이 될 수 없다.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u><삭 제></u>
아니한 사람	
3. ~ 8. (생 략)	3. ~ 8. (현행과 같음)
② ~ ④ (생 략)	② ~ ④ (현행과 같음)

선박투자회사법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7조(발기인) ① 다음 각 호의	제7조(발기인) ①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선	
박투자회사의 발기인이 될 수	
없다.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파산선고를 받은 자로서 복	<u><삭 제></u>
권되지 아니한 자	
3. ~ 7. (생 략)	3. ~ 7. (현행과 같음)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선주상호보험조합법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40조(임원의 결격사유) ① 다음	제40조(임원의 결격사유) ①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조합의 임원이 되지 못	
한다.	
1. • 2. (생 략)	1.•2. (현행과 같음)
3.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u><삭 제></u>
아니한 사람	
4. ~ 8. (생 략)	4. ~ 8. (현행과 같음)
②・③ (생 략)	②·③ (현행과 같음)

수산물 유통의 관리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4조(산지중도매인의 지정) ①	제14조(산지중도매인의 지정) ①
(생 략)	(현행과 같음)
② 위판장개설자는 다음 각 호	②
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에는 제1항에 따른 산지중도매	
인으로 지정하여서는 아니 된	
다.	
1.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1. 피성년후견인
아니한 사람이나 피성년후견	
<u>인</u>	
2. ~ 7. (생 략)	2. ~ 7. (현행과 같음)
③ ~ ⑥ (생 략)	③ ~ ⑥ (현행과 같음)

수산업협동조합법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31조(탈퇴) ① (생 략)	제31조(탈퇴) ① (현행과 같음)
② 조합원이 다음 각 호의 어	②
느 하나에 해당하면 당연히 탈	
퇴한다.	
1. • 2. (생 략)	1.•2. (현행과 같음)
<u>3. 파산한 경우</u>	<u><삭 제></u>
4. • 5. (생 략)	4.•5. (현행과 같음)
③・④ (생 략)	③・④ (현행과 같음)
제51조(임원의 결격사유) ① 다음	제51조(임원의 결격사유) ①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지구별수협의 임원이	
될 수 없다. 다만, 제11호와 제	<u>.</u>
13호는 조합원인 임원에게만	
적용한다.	
1. • 2. (생 략)	1.•2. (현행과 같음)
3.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u><삭 제></u>
아니한 사람	
4. ~ 13. (생 략)	4. ~ 13. (현행과 같음)
②・③ (생 략)	②・③ (현행과 같음)

어선법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31조의3(결격사유) 다음 각 호	제31조의3(결격사유)
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제31조의2에 따른 등록을 할	
수 없다.	
1. • 2. (생 략)	1.•2. (현행과 같음)
3.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u><</u> 삭 제>
아니한 자	
4. ~ 7. (생 략)	4. ~ 7. (현행과 같음)

어선원 및 어선 재해보상보험법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60조(어업재해보상보험 심사위	제60조(어업재해보상보험 심사위
원회) ① ~ ③ (생 략)	원회)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4
해당하는 사람은 위원에 임명	
될 수 없다.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u><삭 제></u>
아니한 사람	
3. (생 략)	3. (현행과 같음)
⑤・⑥ (생 략)	⑤・⑥ (현행과 같음)

어장관리법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8조(등록의 제한) 다음 각 호	제18조(등록의 제한)
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법인인 경우에는 그 대표자를	
포함한다)는 제17조에 따른 어	
장정화・정비업의 등록을 할	
수 없다.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u><삭 제></u>
아니한 자	
3. ~ 5. (생 략)	3. ~ 5. (현행과 같음)

염업조합법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4조(임원자격의 제한) ① 다음	제24조(임원자격의 제한) ①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조합의 임원이 될 수 없	
다.	
1. • 2. (생 략)	1.•2. (현행과 같음)
3.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u><삭 제></u>
아니한 자	
4. ~ 11. (생 략)	4. ~ 11. (현행과 같음)
②・③ (생 략)	②·③ (현행과 같음)

해양환경관리법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01조(임원의 결격사유) ① 다	제101조(임원의 결격사유) ①
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하는 자는 임원이 될 수 없다.	
1.・2. (생 략)	1.•2. (현행과 같음)
3.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u><삭 제></u>
아니한 자	
4. ~ 6. (생 략)	4. ~ 6. (현행과 같음)
②・③ (생 략)	②·③ (현행과 같음)

해운법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8조(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	제8조(결격사유)
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해상	
여객운송사업의 면허를 받을	
수 없다.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파산선고를 받은 자로서 복	<u><</u> 삭 제>
권되지 아니한 자	
2의2. ~ 6. (생 략)	2의2. ~ 6. (현행과 같음)